

## 수원시 청렴메아리

〈2021. 10월 2차〉

사람중심 더 큰 수원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수원시 만들기에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.

2021 수원시 신년화두 : 安民濟生 (편안 안, 백성 민, 도울 제, 살 생)  
안전한 시민, 활기찬 경제

□ 청렴사회로 가는길 □ 매일 실천 청렴



###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

- 내용 :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**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**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.

※ 관련 규정 :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4조 및 「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제4조

관련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처리절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(부당한 지시)를 하였을 경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</li></ul></li><li>-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</li></ul></li><li>-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</li><li>- <b>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시를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수행</b></li></ul></li></ul>

###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(복종의 의무)와 관계

-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소지 제거
  -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(대판2015.10.29. 선고 99도636 판결)

### 예 시

-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,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
-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해 주도록 부당지시
- 수학여행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

**청렴** 청렴시책 : 수원시 청렴팀(031-228-2842), **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**

**청렴** 공직비리 :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(031-228-3073)

※ 부조리 신고를 제외한 **일반 민원은 『열린시장실/시장님보세요』** 이용